



제417회국회(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 징수 근거 마련 >
■ 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51호)

2024.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 징수 근거 마련(안 제67조제3항)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현의원 등 17인

나. 발 의 일 : 2024. 6. 24.

다. 회 부 일 : 2024. 6.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함)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수행하는 각종 방송문화활동의 수혜자인 텔레비전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임. 수신료 제도는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스스로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기 책임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공영방송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수신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방송법」 제67조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구체적인 징수 방식은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당초 시행령에서는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유업무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할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2023년 7월 고유업무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음.

그러나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는 ① 공영방송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수신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점, ② 통합징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수신료 수납률이 크게 향상되고 징수비용이 절감되는 효율적인 제도라는 점, ③ 수신료 부과금액 자체에는 전혀 변동이 없고 오히려 소액의 수신료를 납부하기 위해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킨다는 점, ④ 공익적 프로그램의 보편적 서비스 실현과 시청자의 선택권 강화 및 다양한 방송 서비스 제공, 방송수신환경개선 등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저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방식은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저해하는 제도라 할 것임.

또한, 수신료 징수방식의 결정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징수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을 통해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 징수 근거 마련(안 제67조제3항)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현행 「(구)방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¹⁾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를 결합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그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한편, 공사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의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내용임.
- 「방송법」 제67조제2항²⁾은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공사가 지정한 자’는 한국전력임.
- 당초 「(구)방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은 수신료를 통합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3년 7월 12일에 해당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재의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³⁾은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구)방송법 시행령」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②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2) 「방송법」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3)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②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7.12.>

현 행	개 정 안
第67條(수상기 登錄 및 徵收의 委託) ① ・ ② (생 략) <신 설>	第67條(수상기 登錄 및 徵收의 委託)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수신료의 통합징수 및 분리징수와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수신료에 대한 법적 성질, 연혁 및 해외사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먼저, 수신료의 법적 성질에 대해 살펴보면,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⁴⁾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판례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법적 성질을 “특별부담금”으로 보고 있음⁵⁾.

4)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5)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47184, 현재 1999.5.27., 98헌바70.

- 공영방송 수신료의 연혁을 살펴보면, 1973년부터 자체징수의 형태로 징수되기 시작하였고, 1994년부터 한국전력에 위탁하여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함께 고지되는 “통합징수”의 형태로 징수되었음.
- 공영방송에서 수신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것은 1973년부터인데, 3월에 한국방송공사가 창립되어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가 시작되었고, 1976년 7월부터 우편고지서를 통하여 은행에 자진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징수되었음.
- 1983년부터 1994년 9월까지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47개 시는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징수하는 통합공과금 제도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한국방송공사가 자체징수하였음.
- 1994년 10월부터 한국방송공사가 한국전력에 수신료 징수를 위탁하여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병과되어 고지되는 형태로 “통합징수”되었음.
- 이러한 통합징수 방식은 2023년 6월 14일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16일부터 26일의 10일 간 관계부처 의견조회, 사전영향평가, 입법예고를 거쳐, 7월 12일에 공포되면서 “분리징수”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음.

< 「방송법 시행령」 개정 경과 >

- 2023년 6월 14일 시행령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보고
- 6월 16일 ~ 26일 관계부처 의견조회, 사전영향평가, 입법예고

-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7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 7월 12일 개정 방송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

-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수신료 현황을 비교해 보면, 프랑스는 2022년 수신료를 폐지하고 현재 부가세로 공영방송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수신료는 낮은 수준이고, 공영방송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가장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의 연간 수신료는 3만원이고, 이는 해외 주요국인 영국(28만원), 독일(33만원), 일본(13만원)과 비교하였을 때 저렴한 수준임.
- 해외 각국의 공영방송사 재원 중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 47.0%에 비하여 영국(71.3%), 독일(88.9%), 일본(98.5%)은 수신료가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해외 주요국 수신료 현황 >

구 분	한 국	영 국	독 일	일 본
수신료	30,000원	281,000원 (159파운드)	328,300원 (220.32유로)	132,900원 (14,700엔)
한국 대비(배)	-	9.4배	10.9배	4.4배
재원 비중(%)	47.0	71.3	88.9	98.5

주: 2023년 6월말 기준이고, 환율은 2024년 7월 31일 환율을 적용하였음.
자료: 한국방송공사.

- 해외 주요국의 공영방송의 수신료 징수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영국은 BBC가 수신료를 산정하여 문화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

한 후 최종적으로 의회 심의를 거치고 있고, 미납시 최대 1,000 파운드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로 미납하는 경우 수감될 수 있음.

독일은 6개월 이상 수신료(방송부담금) 미납시 질서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고, 벌금 미납시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음.

일본의 경우에는 NHK가 수신료를 산정하여 내각을 거쳐 국회 승인을 받는 형태로 결정되고, NHK가 수신료를 자체징수하고 있으며, 미납시 할증금을 징수함.

< 해외 주요국 공영방송의 수신료 징수 관련 현황 >

구분	재 원		미납시 의무이행수단	수신료 결정
	주요 재원	광고 허용 여부		
한국	수신료, 광고수입, 기타 부가사업	허용	가산금, 추징금 징수, 체납시 방통위 승인 얻 어 국세체납 처분의 예 의 의하여 징수 가능	이사회 산정 → 방통위 검토 → 국회의결
영국	수신료(2028년 3월 까지 유지), BBC Studio 등 상업 활동에 의한 수입, 정부 보조금	금지	최대 1,000파운드 벌 금형, 고의 벌금 미 납시 수감	BBC 산정→ 문화부 협의· 결정(재무부 동의) + 10년 단위 수신료 근거 칙허장 의회 심의 거쳐 결정
독일	방송부담금(수신료 에서 명칭 변경), 광고·협찬·기타 수입	제한적 허용	행정상 강제 집행 외에 6개월 이상 미납시 질서위반죄 적용, 최고 1,000유로 벌금 부과(납부 거부시 법 정 구속)	KEF(방송재정수요심의위) 에서 산정→ 16개주 정부 검토 → 16개 의회 비준

구분	재 원		미납시 의무이행수단	수신료 결정
	주요 재원	광고 허용 여부		
일본	수신료	금지	할증금 징수, 벌칙 규정은 없음, NHK 자체 직접 징수	NHK 산정 → 내각을 거쳐 국회 승인(NHK 예산)
프랑스	2022년 수신료 폐지, 2024년까지 부가세로 연간 37억 유로(5조원) 지원	허용	-	-

주: 2023년 6월 기준임.

자료: 한국방송공사.

- 한편, 2022년 기준 유럽방송연맹 소속국 중 22개 국가가 수신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11개국이 전력회사에 위탁하여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음.⁶⁾
- 개정안과 수신료 통합징수가 필요하다는 입장 및 한국교육방송 공사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 첫째, 수신료를 통합징수하는 경우, 수신료 징수비용, 수신료 납부를 측면, 납부 편의성 및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저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는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수신료를 통합징수할 경우 구체적으로,
 - ①수신료 징수비용이 절감되고, ② 수신료 수납률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있으며, ③수신료 납부자가 소액의 수신료를

6) EBU(유럽방송연맹), LICENCE FEE AND HOUSEHOLD CHARGES 2022, November 2022.

납부하기 위하여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④공익적 프로그램의 보편적 서비스 실현과 시청자의 선택권 강화 및 다양한 방송 서비스 제공, 방송수신환경개선 등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저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음.

- 둘째, 수신료 징수방식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률로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셋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신료 분리고지는 납부자인 시청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급격한 징수비용의 증가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의 재원 독립성을 유지하고 예측가능한 재원 조달을 위해서 지난 30년간 한국전력공사 위탁을 통해 효율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전기요금 통합고지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 한국교육방송공사 > : 개정안 동의

-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②항 개정(2023.7.12)에 따른 TV수신료 분리고지는 납부자인 시청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급격한 징수비용 증가를 초래함. 수신료 징수율이 떨어지고 징수비용이 현저하게 늘어남에 따라 TV수신료 수입의 급격한 감소가 현실로 드러나는 상황임. 공영방송의 재원 독립성을 유지하고, 예측가능한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지난 30년 간 한국전력공사 위탁을 통해 징수 효율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전기요금 통합고지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기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원안 찬성함
- 다만, TV수신료 징수방식 변경 차원에서 나아가, 디지털 시대를 맞아 TV수

신료 제도 개선 및 금액 현실화 방안 논의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봄.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2023헌마820) 결정문(2024.5.30)에서 ‘공론화 및 여론의 수렴을 통하여 입법부가 수신료의 증액이나 징수 범위 등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헌법재판소 의견 및 언론·방송학계 제안을 반영하여 (가칭)‘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하고, TV수신료 결정절차를 신속히 개선해야 함. 이를 통해 1981년 월 2,500원으로 정해져 43년째 동결된 금액을 현실화하고, 위탁징수 수수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EBS 3% 배분 구조를 정상화해야 함. TV수신료 중심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충당모델이 마련될 때, EBS에게 부여된 공적책임을 다하고, 공익성 높은 고품질 콘텐츠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교육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음.

- 넷째, 수신료에 대하여 KBS가 청구한 헌법심판⁷⁾에 대해 현재 반대의견은, 수신료를 분리고지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은 통합징수라는 특정의 징수방법을 금지하여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법률의 근거나 위임 없이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임.

- 또한, 현재 반대의견은 수신료 분리징수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다른 방식으로도 달성할 수 있는 반면, 30여 년간 일관되게 시행되어 온 통합징수제도를 신뢰하고 이를 전제로 각종 재정적 제한을 감수하여 온 청구인(KBS)에 대하여 다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분리징수제도를 갑자기 시행함으로써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재정적 불이익과 그에 따른 공영방송으로서의 중립성, 독립성, 지속가능성의

7) 2023헌마820등

훼손 우려는 매우 중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임.

- 다섯째,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는 수신료를 통합징수하여 공영방송이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 방송기자연합회 > : 개정안 동의

-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권력 감시와 비판을 비롯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해왔습니다. 공영방송의 재원이 되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특정 세력이나 계층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물적 토대가 되어 왔습니다.
- 공영방송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방송법에서 정한 수신료이며 안정적인 공영방송의 재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기료와 수신료를 함께 부과하고 수납받는 통합징수가 도입됐습니다. 법원에서도 결합 징수가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여러번 판시한 바 있습니다.
- 하지만 정부가 2023년 7월 12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해 통합징수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수신료 현장에서는 혼란으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수신료 수입은 감소가 예상됩니다.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국회는 입법권자로서 방송의 자유가 실현돼 한국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 발전에 공영방송이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올곧게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한국PD연합회 > : 개정안 동의

-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으로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 수신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는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성 확보는 물론이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안 개정이 공감합니다.

- 한국PD연합회에 소속된 공영방송 KBS, EBS PD는 물론 독립제작사와 독립 PD들도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콘텐츠 제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 개정안 동의

- 1981년 책정된 2,500원의 수신료는 40여 년 동안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이 명맥만 유지하며 공영방송의 재정적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1994년 도입된 위탁징수제도는 징수비용을 낮춤으로써 수신료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제도 도입으로 같은 해 KBS 1TV는 상업광고를 폐지하는 등 어떤 국가보다 낮은 금액의 수신료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 하지만 지난해 정부는 느닷없이 분리징수 이슈를 꺼내 들었고 결국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이로 인해 공영방송은 하루아침에 공적책무는 커녕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분리징수는 산업계는 물론이고 시청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공영방송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징수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방송기술인들은 공영방송이 통합징수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국내 콘텐츠 및 방송기술의 발전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 : 개정안 동의

- 정부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수신료 분리징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공정성·공익성 추구 및 방송문화와 공공복지를 향상시켜야 할 공영방송의 재정 위기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방송법에 따라 부과되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 충당을 위한 특별부담금으로 보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9.5.27. 선고98헌바70). 수신료는 방송의 자유, 특히 국가로부터의 독립성과 방송의 기능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며 수신료 수입이 끊어질 경우 공영방송 방송 사업은 당장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 분리징수로 재정이 악화되면 KBS는 감소된 수신료 수입을 만회하기 위해 수익성 위주의 방송 편성을 늘리고 광고수입비중을 확대할 수밖에 없어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현 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유지를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 반면,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수신료 분리징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첫째,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실 ‘국민제안 시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국민참여토론 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통합징수 방식 개선에 찬성함⁸⁾에 따라, 결합징수 방식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시행 중으로, 시행령을 개정한지 얼마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다시 결합징수를 도입하는 것은 분리징수 도입을 준비해온 정책당사자(KBS, 한전)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여 분리납부를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 입장임.
- 둘째, 수신료에 대하여 KBS가 청구한 헌법심판⁹⁾에 대하여 현재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수신료의 구체적인 고지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이는 수신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본질적인 요소로서 법률에 직접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규정한 시행령 조항에 대한 헌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음.

8) 접수된 의견 63,996건 중 56,226건(96.5%)이 통합징수 개선에 찬성하였다고 방통위는 설명함.
(방통위 제출자료)

9) 2023헌마820등

- 현재는 공영방송사의 독립성은 그 조직구성과 재원조달 측면에서 관철되어야 하는 바, 특히 재원조달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이 그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자유를 누리고 국가나 정치적 영향력, 특정 사회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적절한 재정적 토대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통합징수방식이 공영방송의 재원에 기여한 측면은 있으나,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징수방식으로 인한 수신료 과오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고, 청구인은 필요시 수신료 외에도 방송광고수입이나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하여 그 재정을 보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청구인의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 한편,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하여,

KBS가 방송의 공정성, 방만 경영 등 공영방송 본연의 의무와 자세를 저버린 것에 대해 KBS의 주인인 국민이 보내는 질책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KBS가 충분한 반성과 혁신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결합징수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수신료 결합징수 문제를 포함한 방송법 개정과 관련하여 겸허한 자세로 국회의 입법과정을 지켜보고, 결정되는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임.

< 한국방송공사 > : 입법 과정을 겹쳐히 지켜보겠음

- 통합징수 제도는 전기요금과 통합하여 고지되는 방식으로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수신료 수입의 기반이 되었지만, 수신료 과오납 문제 등 일반 국민의 재산권 침해 소지와 납부방식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왔고, 이러한 이유로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여론이 90% 이상이었던 상황에서 수탁자의 고유업무와 결합하여 징수를 금지하는 방송법시행령이 개정(2023. 7. 12.시행)되었음.
- 이러한 징수제도의 변경은, KBS가 방송의 공정성, 방만 경영 등 공영방송 본연의 의무와 자세를 저버린 것에 대해 KBS의 주인인 국민이 보내는 질책으로도 볼 수 있음.
- 이같이 국민의 경고와 질책을 받은 KBS가 충분한 반성과 혁신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결합징수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됨.
- 앞으로 KBS는 수신료 결합징수 문제를 포함한 방송법 개정과 관련하여 겹쳐히한 자세로 국회의 입법과정을 지켜보고, 결정되는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임.

- 종합해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이 수행해야 하는 공적 책무의 내용과 범위를 설정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산출한 후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이며¹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신료를 통합징수하도록 하면서 이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 및 방송기자연합회 등의 통합징수 찬성 의견 등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신중 검토 필요 의견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의 다수의견 및 반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10) 정영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 2023.9., 「방송법 개정안 자문의견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문 의 처
02)6788-5226